

베트남 메콩델타지역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발굴  
및 예비타당성조사

## 과업지시서

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
한국토지주택공사

# 목 차

|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과업지시서.....     | 1  |
| 1. 개요.....        | 1  |
| 2. 과업범위 및 기간..... | 1  |
| 3. 과업개요.....      | 2  |
| 4. 세부 과업내용.....   | 2  |
| 5. 과업의 일반원칙.....  | 9  |
| 6. 과업수행 방법.....   | 12 |
| 7. 과업성과품 제출.....  | 13 |
| 8. 보안대책.....      | 14 |
| II. 예정공정표.....    | 16 |

※ 본 용역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)와 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공동으로 발주하는 용역입니다.

## I. 과업지시서

### 1. 개요

□ 과업명 : 베트남 메콩델타지역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발굴 및 예비타당성조사

□ 과업배경 및 목적

-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출범시킨 「K-City Network」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제공모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“도시개발형” 프로젝트를 추진
- 본 사업에 대한 지원과 개발에 협력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 (이하 LH)가 일부 용역자금을 분담, KIND와 LH가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 및 감독 예정
- 베트남 메콩델타 지역은 인구의 20%인 1,750만명이 거주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 최대의 농산물 생산지로서 잠재력이 크며, 호치민시와의 접근성 또한 향상되고 있는 등 개발압력이 강함
-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발생, 지반침하 등 개발압력과 더불어 리스크 요인도 커지고 있음
- 이에 ‘19.11월 제1차 한-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이에 대한 문제인식 공감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었음
- (지역 개발방향) 메콩델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5개 도시를 중심으로 개발여건 분석을 통해 발전 방향성 제시
- (솔루션 제안) 5개 도시에 대한 도시문제 도출 및 스마트시티 솔루션 제안
- (사업화) 시범사업을 발굴해냄으로써 스마트시티 수출을 위한 초석 마련

### 2. 과업범위 및 기간

□ 과업범위

- 공간적 범위 : 베트남 남부 메콩 델타지역 Cuu Long 강 삼각주[Can Tho city, Tra Vinh 시(Tra Vinh성 내), Cao Lanh시(Dong Thap성 내), Ben

Tre(Ben Tre성 내), Rach Gia시(Kien Giang성 내)]

\* Can Tho시를 제외한 4개의 지역은 성 전체가 아닌 성 내의 도시임

\* 정부 시범사업 대상인 5개 도시가 있는 메콩델타지역의 스마트시티 개발에 관한 지역계획 방향 제시 및 시범사업 발굴을 통한 예비타당성조사

- 시간적 범위 : 2020년

#### □ 과업기간

- 착수일로부터 240일

### 3. 과업개요

(기초분석)

- 사업환경 분석
- 관련 법규 및 제도조사

(계획수립)

- 메콩델타 지역 스마트시티 개발 방향 설정(5개 도시 중심 지역 MP)
-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위한 후보지 선정 및 검토
- 선정된 시범지구의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마스터 플랜 수립

(시범사업 예비타당성조사)

- 시범지구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(기술분야, 재무분야)

(시범사업 실행방안)

- 사업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

### 4. 세부 과업내용

#### 1) 사업환경 분석

##### □ 기초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

- 수원국 현황, 도시여건, 주요 이슈(기후변화 관련 자연재해 등) 등 조사 및 분석
- 도시의 지정학적, 인문·사회적, 문화적 특성, 중점 개발정책과 관련된 발전전략 및 개발계획 등 조사분석

- 도시의 토지이용·교통·환경·행정·재정 등 도시관리 현황 등의 종합분석
- 베트남의 ICT현황, 경제개발, 도시계획 및 건설관련 제도와 정책, 정보통신 기술수준 분석
-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따른 메콩델타지역의 도시개발에 미치는 영향 분석

#### □ 관련 계획 분석

- 베트남 주택, 토지 및 경제관련 주요 정책 조사
  - 국토·도시개발정책, 주택 건설 및 공급정책, 토지정책 (토지보상, 외국인 토지사용권 등), 사회·경제개발정책 등 주요 정책 조사
- 상위 및 관련 계획 분석
  - 도시개발, 스마트시티개발 관련 상위계획 조사 및 분석  
ex) 국가개발전략계획, 950/QD-TTg 결정문 등

#### 2) 관련 법규 및 제도조사

##### □ 베트남 토지 및 도시개발 법규 및 제도 분석

- 베트남 토지취득법(The Land Acquisition Act) 검토
  - 법 주요내용 검토
  -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고려사항 분석
- 토지권리 확보 방안 및 토지보상 관련 제도 조사
  - 외국인 토지사용권 취득 절차, 조건 검토
  - 토지사용권 취득에 따른 원주민 이주대책 검토
  - 안정적인 토지 확보 방안 제시
  - 개발단계의 토지사용권 취득, 운영단계의 토지사용권 임대
- 도시개발 법제 조사
  - 도시개발 및 토지 관련 법령 조사 분석 및 시행 절차 검토
  - 토지이용의 분류와 규제 검토
  - 토지 용도변경 조건 및 절차 분석(ex. 농지 → 주거·상업)
  -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분석

### 3) 메콩 델타 지역 스마트시티 개발 방향 설정

#### □ 스마트시티 도입 방향 제시

- 기후변화를 고려한 5개 도시를 포함한 메콩델타 지역 일대 스마트시티 도입 비전 및 중장기적 관점미래상 도출
- 메콩강 삼각주 5개도시의 도시문제, 재해문제에 대한 유사 이슈 분석
- 5개 도시의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지역의 단계적 개발 방향 및 컨셉 제시
  - 스마트시티 개념 및 이론, 도시개발 트렌드를 검토하여 기본방향 제시
  - 도시 지역별 기능 부여 및 단계별 조성 방향 제시

### 4) 스마트시티 개발 시범사업을 위한 후보지 선정 및 검토

#### □ 후보지 선정 및 검토

- 과업대상 5개 도시의 평가를 통한 주요도시 선정
  - 스마트시티 개발의 필요성과 각 도시의 스마트시티 성숙도 분석
  - 스마트 시티 개발 과제, 기회 및 잠재력에 대한 평가 요약
  -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지역적 우선순위 제시
- 선정된 주요도시 내 시범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후보지(이하 “시범지구”) 선정
- 시범지구 공간적 범위 제시
  - 시범지구 선정을 위해 베트남 건설부 등과 협의결과 도출 포함

#### □ 미선정 도시의 스마트시티 솔루션 방향 제시

- 미선정 도시 각각의 문제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솔루션 방향 제시 미 기대효과
- 미선정 도시 각각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투자 요소 우선순위 및 투자 로드맵 제시
- 공통 적용 가능한 스마트시티 개발 컨셉 제시

### 5) 선정된 시범지구의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마스터플랜 수립

#### □ 개발 기본구상 및 마스터플랜 수립

- 개발 기본방향 설정
  - 환경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지 도시문제 도출을 통한 기본 방향 제시

- 시범지구 개발 기본구상 및 도입기능 설정
  - 시범지구의 사업환경분석, 기본계획, 주변지역과의 연계 방안 등을 바탕으로 도입기능 및 시설 제시
  - 기본구상은 인구와 산업 등 관련지표를 감안하여 미래지향적 공간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개발축, 교통축, 녹지축 등과 상호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설정
- 마스터플랜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
  - 현지 토지개발 법제를 고려하여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및 마스터플랜을 통한 스마트시티 개발 방향 제시
  - 부동산 시장조사
  - 타 개발사업 사례를 고려하고, 부동산 시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용도별 수요분석
  - 인구수용 규모와 밀도, 주택 유형 및 규모, 토지용도별 배분 계획 수립
- 인프라 공급 계획 수립
  - 상위계획, 기본계획 등을 고려한 기반시설 설치 방향 제시
  - 공급처리시설 계획 수립 (진입도로, 상수, 우·오수, 전력, 통신 등)
  - 친환경 계획 및 재해 예방 저감대책 수립
  - 지역여건 및 도시연계를 고려한 인프라 조성 방향 등

## 6) 시범지구 개발사업 기술분야 예비타당성 조사

### □ 개발여건 분석을 통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

- 현황조사
  - 대상지 및 주변 지역 일반현황 조사
  - 인구, 가구 수 등 사회경제지표 조사
  - 국가계획, 지역계획, 도시계획, 지역 관련 개발계획 등 조사
  - 자연환경, 사회·경제·문화·환경 현황조사, 등
  - 관련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
- 토지조사
  - 토지이용현황 조사
  - 토지소유권 조사
  - 지장물 및 개발 장애요인 조사

- 토질조사
  - 토질 관련 문헌조사(연약지반 여부 및 준설토 성분 추정 등)
- 종합분석
  - 사업대상지 현황 및 물리적 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SWOT 분석 등 실시
  - 마스터플랜, 인구추계를 통한 선도지역 적정 추정인구 및 개발 범위 제시
  - 홍수발생, 지반침하 등 기술적 리스크 도출 및 극복방안 제시
  - 종합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개발 방향 설정 시 활용 가능한 방안 제시
  - 마스터플랜 및 시범사업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, 적정성,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, 검토결과에 따라 필요시 기존 토지이용구상 수정·보완

#### □ 스마트 솔루션 도입 방안 검토

- 도시 문제 분석 및 시범지구에 도입할 스마트시티 솔루션 제시 및 기대효과
  - 문제극복을 위한 시스템 등 스마트시티 기술적 도입방안 등

### 7) 시범지구 개발사업 재무분야 예비타당성 조사

#### □ 사업비 산정

-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 등 공사비 산정
  - 현지 여건을 감안한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
  - 지구외 도로, 상·하수도 등 상위계획을 고려한 본 사업구역의 기반시설 및 스마트솔루션 소요예산 검토
- 보상비, 공사비, 금융비용 및 기타비용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비 산출
- 수원국가의 세금관련 체계(관세, 부가가치세 등)
- 분양가 산정
  - 부동산 시장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적정 분양가격 산정

#### □ 사업구조 수립

- 사업구조 수립
  - 사업시행을 위한 최적의 사업구조 제시
  - 본 사업의 적정 부채비율 및 타인자본 조달비용 제시

## □ 재무분석 및 경제성 검토

- 재무모델 작성 (사업구조와 연계)
  - 사업의 주요 가정사항 및 현지 법인세, 부가세 등 주요 세제 반영된 초기 재무모델(Excel File) 제공
  - 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 재무모델 작성
- 재원조달계획 수립
  - 자기자본 투입계획, 타인자본 조달계획, 분양수입을 활용한 사업비 조달계획 수립
  - 환율변동 및 환전 리스크 헷지 방안 검토
  - 정치적 위험, 계약불이행 등과 관련된 보험(국제기구 보증 포함) 검토
  - MDB, ECA 등 정책금융 및 상업은행 조달 가능성 및 조달방안 검토
  - 해당국 및 주변국 도시개발사업 Project Financing 사례 검토
  - 적정 토지 분양가 및 임대료 도출
- 재무 분석 및 경제성 검토
  - 수익성지표 분석(NPV, ROE, ROI, 회수기간 등)
  - 안정성지표 분석(DSCR, 현금과부족 발생여부 등)
  - SPC 추정재무제표 작성
  - 스마트시티를 통한 경제적 편익 등
- 민감도 및 시나리오 분석
  - 차입방식, 차입조건 상세화
  - 자금조달 시나리오 분석(재원조달 구조 변경, 재원별: 외국자본, 국내자본 등)
  - 주요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(사업비, 운영비, 이자율, 환율, 자금조달 등)

## □ 사업 리스크 분석 및 회피방안

- 사업위험 분석 (Risk Analysis)
  - 시행사 위험(인허가, SPC 설립 및 출자, 과실송금 등) 분석
  - 투자 회수전략 수립 시 통화간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 헷지방안
  - 리스크 조치계획(Risk Management Plan) 수립

## 8) 사업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제시

### □ 사업화를 위한 법률 검토

- 사업대상국의 외국인 투자환경 및 관련 법률 분석
  - 사업대상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건, 권한, 제약 등 재무적 투자자 관점에서의 투자 관련 법률 검토
  - 외국인투자법, 관련 제도(정부 고시) 등 검토
  - 국/내외 과소자본세제, 외환, 차입규제 등 자본구조에 대한 제약조건 검토
  - 투자형태에 따른 세제 검토
- 법인 설립 절차
  - 법인 설립 절차 검토
  - 단지 조성 후 분양에 관한 법률적 검토
- 기타 법률적 리스크 등

### □ 시범사업 사업화 전략 수립

- 후속사업과의 연계가능성, 사업 실행력 제고방안, 자원조달방안, 판매·분양·수입구조, 마케팅 전략 등 사업추진전략 검토 제시
- 사업시행체계(공공, 민간, 민관합동, 공적개발 원조 연계 등), 추진절차, 토지보상 및 취득(국·공유지 활용, 전면수용, 환지, 이주대책 등), 공사시행방안 등 사업실행 수립계획
- 제안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국가 또는 지역차원에서 중·장기 전략 및 비전, 포괄적 발전방향, 성장관리방안, 연차별 추진계획 등 제시
- 제안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환경개선, 도시기반시설 확충, 공공적 가치 창출, 지역경제기반 강화 등 기대효과 제시
- 법·제도 개선방안, 정책제안, 정부지원 방안, 정부·공공·민간 시행주체별 역할분담 등

### □ 사업 시행 로드맵 수립

- 시범지구 사업화를 위한 사업구조화, 금융기법 등 구체화 방안 종합
- 외국기업 도시개발(복합개발) 진출 사례 분석
  - 외국기업 단독개발, 외국기업과 로컬기업의 JV개발, 로컬사 단독개발 등 사례별 구분(베트남 및 주변국)

- 사업 시행 로드맵 수립
  - 시범지구 개발사업 준공 시까지 필수 인허가 승인항목 분석 및 제시
- 후속과업을 위한 제언

## 9) 기타 사항

### □ 현지 전문가 세미나 또는 워크숍 개최

- 하노이 및 메콩델타지역 등에서 2회 개최 (베트남 요청에 따라 장소변경 가능)
  - 주제는 베트남 건설부와 협의하여 결정
  - \* 현지 공무원 참석 경비 지원 포함, 1회는 현지 최종보고회와 병행가능

### □ 현지 주무관청 보고서

- 현지 주무관청을 위한 최종 요약보고서와 과업 최종 결과보고서의 구성은 상이할 수 있으며, 용역사는 별도의 현지 요구 양식의 요약보고서를 작성/제출하여야 함
  - ※ 본 과업지시서 7. 과업성과품 - 최종보고서 참조

## 5. 과업의 일반원칙

### □ 자료활용

- 시장조사와 관계문헌은 국내 기존자료는 물론 외국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하며, 통계 등을 반영할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
-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공공기관,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,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함

### □ 과업수행원칙

- 최종낙찰자(이하 ‘과업수행자’)는 과업수행 상의 주요사항과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

- 본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자료협조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
- 본 과업의 수행상 시장조사, 법률, 기술, 수요 등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 위탁범위 및 내용, 위탁금액, 위탁의 필요성,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 등을 명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함
- 외부업무위탁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·기술적 제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(계약상대자, 외부전문기관 포함)가 부담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수행연구자별 세부 업무범위 등을 정하여 발주자와 협의를 통해 최종확정하여야 함
- 제안서 제출 시 포함된 연구인력으로 과업을 수행하며 변경할 경우 기존 인력보다 업무수행역량이 높은 자로 한정
  -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가능한 과업수행 인력의 비율(예시: 30% 이내)은 발주처가 지정함

#### □ 과업의 변경

- 계약 후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,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, 과업 내용의 추가 등으로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 범위 및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음
- 본 과업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음
- 기타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해석상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당사자가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가 안 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름

#### □ 일반조건

- 과업진행에 대하여 발주자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책임자와 책임연구원이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자의 수정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

- 각 부문별 과업 항목은 각 세부항목별로 수행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함
-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임의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제반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
- 과업수행 상 경비는 계약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초과 사용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, 사용내역에 대한 집행근거(영수증 등)는 준공 시 제출하여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서는 사후에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음
- 기타 과업의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주요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

#### □ 특별조건

-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, 과업수행의 성과품은 발주자가 소유함  
 ※ 발주자는 과업수행자의 동의 없이 성과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
- 사전승인을 득한 연구인력으로 과업을 수행하며, 변경할 경우, 기존 인력보다 업무수행역량이 높은 자로 한정하며,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

#### □ 성과물 작성

- 사용되는 용어는 국문 및 영문으로 통일성 있게 작성하며, 전문용어는 ( ) 안에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하며, 교육부제정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야 함
- 작성된 최종보고서 원안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, 그 결과 성과품이 과업지시서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발주자에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 계약기간 내에 인쇄·납품해야 함
- 성과품에 대한 작성방법, 양식, 활자크기, 지질 및 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·결정해야 함

- 공정보고, 현지조사, 착수보고, 중간보고, 최종보고 등 과업수행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모든 보고 및 관련자료는 서면과 전자파일로 제출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발주자로부터 <발주자 수행> 과업(해당 시)의 결과물을 제공받아 과업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최종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함. 이를 위한 세부 방안은 감독관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함

※ <발주자 수행> 과업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책임을 지고 수행

## □ 기 타

- 과업수행자는 발주자가 과업지시서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함
- 용역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보안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
-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용역 준공 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, 성과품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추가로 인쇄할 수 없음

## 6. 과업수행 방법

### □ 전문가 자문

- 본 과업내용 관련, 필요시 관련기관의 실무책임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정하여 자문계획(자문회의, 토론회, 워크숍 등)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실시하여야 함

### □ 현지조사

- 사업대상국의 인문, 자연, 경제, 법률 및 사업환경 조사 등 내실 있는 과업수행을 위해 사업대상국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조사지역 및 일정, 조사자(과업책임자 및 참여연구원, 위탁 외부전문기관 포함) 등 해외조사계획을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실시함

- 과업수행자는 해외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조사 관련 활동 내역 등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함

#### □ 공정보고 및 추진현황 회의

- 매월 말 기준으로 과업의 추진상황을 작성하여 용역진도보고를 익월 5일 까지 제출해야 함

#### □ 협업

- 과업수행자는 베트남 정부 및 현지기관,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협업하여야 하고, 필요시 사안별로 전문기관에 하도급 등 시행할 수 있음
  - 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(e.g. 현지 시장조사 등은 현지 리서치 및 마케팅 수행경험이 있는 글로벌 서비스(자문) 회사에서 시행)

## 7. 과업성과품 제출

#### □ 착수보고(국내 수행)

-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, 보안각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첨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
  - 착수보고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주요내용을 확인하고,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, 과업참여자 명단, 과업수행조직의 편성 및 공정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함
- 착수 보고회는 국내에서 수행(국문, 영문 보고 PPT 준비)하며, 발주기관 및 대상국 정부의 의견을 수렴, 향후 과업수행에 반영하여야 함

#### □ 중간보고 (국내 초청연수와 연계)

- 중간보고는 감독관과 보고일정을 협의하고 보고서(국문, 영문 각 10부)를 제출하여야 하며, 동 보고서에는 착수보고 시 확인한 주요내용에 대한 과업수행방법을 구체화하고, 검토한 내용의 잠정 결론 및 세부내용이 포함되어야 함
  - 해당 사업의 대상국 정부 협의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한 중간보고 요약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

- 중간보고는 초청연수와 연계하여 대상국 관계공무원 참석하 국내에서 수행(국문, 영문보고 PPT 준비)
  - \* 2020.10.28~30(예정)까지 열리는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(WSCE) 일정과 연계한 중간보고 및 공무원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
  - \* COVID-19로 공무원 초청연수, 보고회 장소 제한시 감독관 및 현지정부와 협의하여 적정 보고회 추진방안 마련(e.g. 현지 세미나와 병행 등)

#### □ 최종보고 (현지 수행)

- 최종보고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결정하고 조사연구한 최종 내용을 보고해야 함. 단, 최종보고에서 제안된 수정 내용을 감안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해야 함
- 최종보고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성과물작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최종 보고서, 요약보고서 각 국문 10부, 영문 20부를 제출하여야 함. 또한 최종 보고서, 기타 참고자료 및 재무모델의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
  - 해당 사업의 대상국 정부 협의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
- (현지기관제출용 최종보고서) 베트남의 현행 규정 및 양식을 준수하는 최종 보고서요약본 별도작성 제출(영문 00부\*, 필요시 베트남어로 대체 가능)
  - \*현지기관 협의 후 요청부수 반영
- 최종 보고회는 현지에서 수행(국문, 영문 보고PPT 준비)
  - \* COVID-19로 현지 수행 제한시 감독관 및 현지정부와 협의하여 적정 보고회 추진방안 마련

#### □ 수정보고서

-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후 5개월 이내에 추정수입 및 운영비 추정 등에 사용된 기초자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본 변경사항을 반영한 수정 보고서를 발주자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 국·영문 각 10부를 제출하여야 하며, 이 때 수정보고서(국·영문), 수정 참고자료, 수정 재무모델의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

## 8. 보안대책

## □ 보안 준수

- 과업책임자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4조(용역업체에 대한 보안대책)를 준수하여야 하며,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동 세칙에 의한 보안각서(별첨)를 제출받아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
-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, 분실,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,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,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, 대외비와 일반자료보관함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
-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,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
-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규정 이행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
- 최종보고서 등 성과물(확정안 포함)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생산·관리하여야 함
- 과업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
-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고 보안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, 성과품에는 발간근거 명시(업체명, 인가근거, 참여자, 발간일자) 및 원지, 폐지,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여야 함
- 과업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, 정규직원에게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함
-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때는 필요한 최소부문만 생산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, 기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짐
-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각종 자료에 대하여 보안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함
-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,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/시행하여야 함
- 성과품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함

## II. 예정공정표

| 항목                      |    | 1개월   | 2개월 | 3개월 | 4개월 | 5개월   | 6개월 | 7개월 | 8개월   | 비고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|--|
| 1. 사업환경분석               |    | ■     |     |     |     |       |     |     |       |    |  |
| 2. 관련 법규 및 사례조사         |    | ■     |     |     |     |       |     |     |       |    |  |
| 3. 메콩델타 지역 스마트시티 도입방향   |    |       | ■   |     |     |       |     |     |       |    |  |
| 4. 시범사업을 위한 후보지 선정 및 검토 |    | ■     |     |     |     |       |     |     |       |    |  |
| 5. 기본구상 및 마스터플랜 수립      |    |       | ■   |     |     |       |     |     |       |    |  |
| 6. 예비타당성조사              |    |       | ■   |     |     |       |     |     |       |    |  |
| 7. 실행방안 검토              |    |       |     |     | ■   |       |     |     |       |    |  |
| 8. 성과품 작성               |    |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  |     | ■   |       |    |  |
| 보고회                     |    | 착수 보고 |     |     |     | 중간 보고 |     |     | 최종 보고 |    |  |
| 과업진도율                   | 당기 | 10    | 10  | 15  | 15  | 15    | 15  | 15  | 5     |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누적 | 10    | 20  | 35  | 50  | 65    | 80  | 95  | 100   |    |  |